

#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857
----------	------

제출연월일 : 2024. 3. .

제출자 : 하남시장

## 1.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제정안 :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기간 : 2024. 1. 5. ~ 2024. 1. 26. (21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0. 관련부서 : 경기도 노동안전과**

##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남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팀장 직위·성명	일자리정책팀장 송동현
	주무관 성명·전화번호	정근헌 (790-50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4. 5. 17.] 제2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5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 나. 비용 발생 요인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비 - 근무자 2명 인건비 및 차량 1대 운영비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관내 산업현장 점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

###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총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450	90	90	90	90	90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50	90	90	90	90	90

다. 자원조달방안 : 시도보조금 및 자체재원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4. 작성자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황진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도비보조금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세 출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도비보조금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자체재원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재원 조달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의존 재원	소 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보조금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	-	-	-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